



『글로벌 위안화 보통예금』핵심 상품설명서

▶ 기본정보

상품특징	• 입출금이 자유로운 위안화(CNY) 보통예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가입통화	• 중국 위안화(CNY)		
적용금리	•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위안화(CNY) 외화보통예금 금리 ※ 2024.03.20. 기준 세금납부 전 위안화(CNY) 외화보통예금 금리 : 연 0.00%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거주자)		
예금자보호	○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화현찰수수	료 면제		
부가혜택	: 이 예금에서 발생되는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다만 가입일로부터 매1년마다 미화환산 2천불 해당금액까지 입금 또는 출금 시 면제. 미화환산 2천불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외화현찰수수료 부과 (CNY 외화현찰수수료: 3%, 가입일로부터 매 1년마다 미화환산 2천불한도 복구됨) ▶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예시			
	입금방법	외화현찰	외화현찰 수수료	
		입출금 구분	우대 전	우대 시
	이팅청차	입금	징수	면제
	외화현찰	출금	인출시 당연 면제	인출시 당연 면제
	외화대체*	출금	현찰 출금시 징수	면제
	원화	출금	현찰 출금시 징수	면제
이자계산방법	• 이자 계산은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			
이자지급시기	• 이자원가식(미	H월 셋째 주 토9	요일에 결사하여 익	일에 원가)





『글로벌 위안화 보통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상 품 명 : 글로벌 위안화 보통예금

·상품특징: 예금의 만기를 정하지 않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중국 위안화(CNY) 외화예금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제한 없음
가입통화	• 중국 위안화(CNY)
상품유형	• 외화보통예금
거래방법	• 신규 및 해지 : 영업점, 비대면 채널
이자지급시기	• 이자원가식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결산하여 익일에 원가)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기본이자율	•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위안화(CNY) 외화보통예금 금리 ※ 2024.03.20. 기준 세금납부 전 위안화(CNY) 외화보통예금 금리 : 연 0.00%		
이자 산출근거	• 이자 계산은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		
적용세율	※ 적용세율은 2024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거주자) ※ 적용세율은 2024.03.20.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	
예금자보호 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불가	• 해당사항 없음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해당사항 없음	
거래중지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제5조에 따라, 예금잔액이 미화 10달러 상당액이하이며 연결계좌에 잔액이 없고, 최종거래일로부터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자료열람 요구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 및 운영 등에 원 • 은행은 법령, 제32	(I·관리하는 다음의 자료 다. 한 자료, 계약의 이 융소비자의 권리행사 관한 자료, 업무 위!	에 대한 열람(사본 및 경 행에 관한 자료, 글 사에 관한 자료, 내 탁에 관한 자료 업비밀의 침해 등의	형취 포함)을 당용상품 등에 관한 부통제기준의 제정 사유가 있는 경우
우대혜택	•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이 예금에서 발생되는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다만 가입일로부터 매1년마다 미화환산 2천불 해당금액까지 입금 또는 출금 시 면제. 미화환산 2천불 해당금액 초과 시에는 외화현찰수수료 부과 (CNY 외화현찰수수료: 3%, 가입일로부터 매1년마다 미화환산 2천불 한도 복구됨) ▶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예시			
GIOII -	입금방법	외화현찰	외화현칠	수수료
	8008	입출금 구분	우대 전	우대 시
	 외화현찰	입금	징수	면제
		출금	인출시 당연 면제	인출시 당연 면제
	외화대체	출금	현찰 출금시 징수	면제
	원화	출금	현찰 출금시 징수	면제
1	* 외화대체: 현찰을 수반하지 않는 전신환형태(해외로부터 받은 송금, 외화예금이체 등)			

3 유의 사항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외화현찰 또는 대체로 찾으시거나 맡기실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 ·이 예금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이 상품은 우리은행 외환사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 (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